

#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468
----------	------

2021년 7월 2일  
보건복지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년 5월 28일 김경영 의원 외 11명
2. 회부일자 : 2021년 6월 1일
3. 상정일자 :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1년 6월 18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 (김경영 의원)

### 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는 돌봄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 등과의 연계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“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”를 구성·운영하고 있음.
- 부칙으로 규정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대응 강화 등을 위해 존속기한 조항을

신설하고자함.

## 2. 주요내용

- 협의회 존속기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(안 제17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아동복지법」, 「아동돌봄 지원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### 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#### 1 조례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돌봄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 등과의 연계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·운영된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협회의 존속기한이 2021년 1월 2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운영 등을 위해 존속기한을 신설하고자 제안되었음.

#### 2 주요사항 검토

##### □ 개정안의 주요내용

- 개정안은 부칙으로 규정된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협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본문에 협회의 존속기한을 3년으로 하는 안 제17조(협회의 존속기한)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임.

##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17조(협회의 존속기한) 협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.
제17조 (생략)	제18조 (현행 제17조와 같음)

## □ 협의회 존속기한의 만료

-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<sup>1)</sup>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고 있으며,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음.
- 위 조례에 따라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의 경우 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서 협의회의 존속기한을 부칙<sup>2)</sup>으로 정하고 있음.
  - 제284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중 협의회 존속기한 2년 제한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, 추후 연장하는 것으로 논의하였음.
- 이후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는 조례 시행일 2019년 1월 3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21년 1월 2일에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현재 협의회는 실효된 상태임.
  - 협의회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존속기한 만료 전에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, 집행부가 이를 인지하지 못

---

1)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.

2) 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 부칙<제6963호, 2019.1.3.> 제2조(협의회의 존속기한) 제9조에 따른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.

하여 존속기한 만료일이 지나 두 차례의 임시회(제299회, 제300회)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.

#### □ 협의회 존속기한의 신설

-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는 돌봄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'21년 온마을아이돌봄 사업의 확충과 돌봄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의회의 운영체계 내실화가 추진되는 단계로 협의회 운영의 필요성과 연속성이 인정되어 의회차원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안함.
-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에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협의회 존속기한을 3년으로 하는 동 개정안은 그 입법의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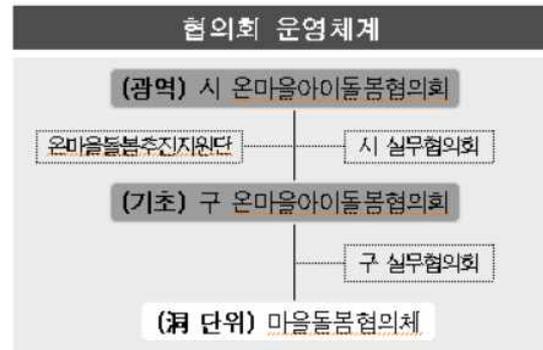
#### □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구성·운영

-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는 돌봄 지원 기본계획 수립,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18년부터 설치·운영되고 있으며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매년 2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음.

### 市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개요

- 위원장 : 행정1부시장(당연직)
- 위 원 : 15명 내외 ※ 실무협의체 별도 구성·운영('18.11.~)
  - 여성가족정책실장, 평생교육국장, 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, 교육정책국장
  - 시의회의원, 자치구·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, 관련 전문가 등
- 임 기 : 2년(연임 1회 가능)
- 운 영 : 年 2회 정례회의 개최(필요시 수시개최 가능)
- 주요 심의내용

-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돌봄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
-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

출처 : 2020년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활성화 계획(서울시)

- 2020년까지 총 5회의 협의회가 개최되었으며, 온마을아이돌봄체계 구축 추진, 우리동네키움센터 추진·확충, 코로나19 긴급돌봄체계 구축 등 돌봄지원 활성화와 연계·협력에 기여하고 있음.

<b>1. '18년 제1차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('18. 12. 18.)</b>	
의제	-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체계 구축 추진 방향 공유 -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 현황 보고 - 교육청 초등돌봄교실 확대 계획 및 자치구와 협력 우수사례 공유
<b>2. '19년 제2차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('19. 2. 20.)</b>	
의제	-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대상 보고 및 키움센터 확충 협조 논의 - 자치구 우리키움참여단 구성 관련 협조 - '19년도 1학기 초등돌봄교실 추진 현황 논의

<b>3. '19년 제3차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('19. 12. 12.)</b>	
의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</li> <li>- 온마을돌봄추진지원단 사업보고(온마을돌봄추진지원단)</li> <li>- 2020년도 초등돌봄교실 확대 계획(교육청)</li> </ul>
<b>4. '20년 제4차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('20. 6. 26.)</b>	
의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긴급돌봄서비스 연계 협조</li> <li>- 융합형키움센터 마을돌봄조정관 운영 협조</li> <li>-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립초교 스쿨버스 연계 협조</li> <li>- (교육청) 초등돌봄교실 추진현황, 코로나19 긴급돌봄 운영</li> </ul>
<b>5. '20년 제5차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('20. 12. 22.)</b>	
의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20년 온마을 아이돌봄 사업 주요 추진현황</li> <li>-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개소 및 운영안내</li> <li>- 일반·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</li> <li>- 코로나19 온마을 긴급돌봄체계 구축 협력</li> <li>- (교육청) 2021년 서울시 초등돌봄교실 추진계획</li> </ul>

출처 :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개최 세부 실적(서울시)

### 3 종합 의견

- 개정안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 11조에 따라 협의회의 존속기한을 3년으로 신설하는 안으로 입법의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, 아이돌봄 사업의 확충과 운영내실화를 추진해야 하는 시점에 협의회 존속기한의 만료로 발생된 공백상태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된다 할 것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 은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

(김경영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46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5월 28일  
발 의 자 : 김경영, 권수정, 김경우,  
김기대, 김제리, 김춘례,  
김화숙, 박기재, 이영실,  
이정인, 조상호, 황인구  
의원(12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는 돌봄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 등과의 연계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“서울특별시 은마을아이돌봄협의회”를 구성·운영하고 있음.
- 부칙으로 규정된 은마을아이돌봄협의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대응 강화 등을 위해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고자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협의회 존속기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(안 제17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아동복지법」, 「아이돌봄 지원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,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 
제17조(협약회의 존속기한) 협약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  
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  설&gt;</u></p> <p><u>제17조</u> (생   략)</p>	<p><u>제17조(협회의의 존속기한) 협회의</u>  <u>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</u>  <u>부터 3년으로 한다.</u></p> <p><u>제18조</u> (현행 제17조와 같음)</p>

문서번호

2021052400000010

## 미첨부 사유서 (1호)

요청인 : 보건복지위원회

담당 : 조도형 과장  
이정수 팀장  
채소영 주무관

접수일 : 2021.05.24

회신일 : 2021.05.24

내용문의 : 02-2180-7942

###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 
예산정책담당관  
Seoul Metropolitan Council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(협회의 존속기한) 신설에 따라 조례 시행일로부터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존속기한 3년에 해당하는 협회 운영비용 발생
  - 기존 부칙으로 규정되어 운영되던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지속적인 대응강화를 위한 존속기한 조항 신설임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# 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 ≙ 15,000천원

#### ○ 추계의 전제

-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위원 및 운영방식은 기존과 똑같으므로 기 편성된 '21년 협회 운영예산(5,000천원)과 존속기한에 해당되는 협회 운영 연간 발생비용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○ 총 비용(합계) ≙ 15,000천원(연평균 3,000천원)

(단위 : 천원)

연도 구분	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	합 계
세입	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운영비용 (안 제17조)	5,000	5,000	5,000	-	-	15,000
	소계(b)	5,000	5,000	5,000	-	-	15,000
□총 비용(b-a)		5,000	5,000	5,000	-	-	15,000

○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운영비용 ≙ 15,000천원

= 연간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운영비용 5,000천원 × 3년

#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당관 조도형

정책조사팀장 이정수

주무관 채소영

☎ 02-2180-7942

e-mail : liz1998@seoul.go.kr

#### 참고)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운영

##### 사업개요

##### 추진근거

- 민선7기 공약 초등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전면확대 중 ‘지역사회와 교육청이 참여하는 온종일 아이돌봄 협의체 운영’
-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(협의회 설치 및 구성)

##### 구성·임기 : 15명 이내(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 포함), 2년(연임가능)

- 위원장: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/ 부위원장: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장

##### 주요기능

- 돌봄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
-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심의

##### 소요예산 : 5백만원(시비 100%)

##### 추진실적

##### 자치구별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구성 및 운영

- 22개 자치구 구성완료 및 운영중, 25개 소자치구 온마을아이돌봄 조례 제정

##### 돌봄협의회 등 지역단위돌봄생태계 조성 관련 실무자 회의 개최 : ' 21. 3.

- ※ 2020년까지 총 5회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개최